

공탁보충자료

- 2023년 시험 후 추가되거나 개정된 공탁선례-

*** 집행공탁 관련

□ 관련선례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私人)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채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채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2311).

*** 공탁정정 관련

□ 관련선례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 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 전체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02303-1).

*** 변제공탁 관련

□ 관련선례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음을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한편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202307-1).

*** 형사공탁 관련 ***

1. 제도안내

Q1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에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목적입니다.

Q2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 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때에 필요한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상세 내용
토지관할(제1항)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공탁자(제1항)	형사 피고인으로 한정
공탁원인(제1항)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 기재(제2항)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을 기재
공탁원인사실 기재(제2항)	피해발생시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공탁통지 방식(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공탁물 수령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서면(제4항)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함

Q3 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 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 하여야 합니다.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피공탁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의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의 차이점 개괄]

구 분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피공탁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성·가명), 형사사건번호
공탁통지 방법	피공탁자 주소지에 배달증명	인터넷 공고
형사공탁사실 통지	-	공탁관 ⇨ 법원 및 검찰
동일인 증명서 발급	-	법원 또는 검찰 ⇨ 공탁소
출급청구 시 첨부서류	공탁통지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Q4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나요 ?

-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 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 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Q5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Q6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합니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의 도입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Q7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 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라는 점, 주식회사 등 법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의 요건인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회사에 대한 합의금 등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Q8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떻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는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소에서 공탁 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되므로 피공탁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9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탁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 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성명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 사실을 기재합니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 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홍00”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란에 “홍00(사망)”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10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 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 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위원 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 - “양형기준” 참조).

*** 공탁신청절차

Q11 형사공탁 신청 절차와 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공탁관의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게 되고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형사공탁 사실을 전자공탁홈페이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 사실을 공고 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Q12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 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Q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 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 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 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1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 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그런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 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관할 공탁소에 송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지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공탁소 또는 발급기관(법원·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송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방식 개괄]

형사공탁 특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원격지 신청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공탁신청	○	○	○
지급신청	○	×	○
공탁서 정정신청	○	×	×
열람·사실증명 신청	○	×	×

Q15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출급청구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전자공탁시 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출급 청구도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Q16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 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 의 반대급부의 내용 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 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 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 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 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 부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Q17 공탁서에 어떤 법령조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 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하여 공탁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면 됩니다. 형사공탁서 법령조항 란에 “공탁법 제5조의2”가 부동문자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자가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소에서 전산시 스템 입력 시 공탁근거 법령조항 란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18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 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다.

○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례: 홍길동, 홍길, 홍□동, 성춘향(가명)

○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학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도 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1. 홍길동 2. 홍길○ 3. 홍□동 4. 성춘향(가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Q19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20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산입력 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공고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 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 단,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1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 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 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 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22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법은?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23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성명, 별칭)	피공탁자	성명	1.흉전등 2.흉전○ 3.흉□등 4.성춘향(가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원여부 및 사건번호				
	주소 (본점, 주소부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보관은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0000. 0. 0. 00.00점 0시 00분 00초 0진 0, 00석당 앞에서 피해자 흉전(○)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자료금, 위자료 등)을 흉전(○)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인관·복사 문헌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란 공탁함					

○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령 명칭만 기재해도 됩니다.

Q24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 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Q25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 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Q26 공탁자의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Q27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인가요?

○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한편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발급받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 서식 참조).

Q28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Q29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 공탁자는 공탁신청 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형 2000-4 참조).

***** 형사공탁 공고 및 사실통지**

Q30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Q31 공탁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되나요?

-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자 정보가 자동생성 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 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고, 형사공탁통지를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과 그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피공탁자별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자동 생성되어 출력되고, 형사재판부에서는 발급 담당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 '문서확인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공탁관은 위 각 문서의 '문서확인번호'를 대조하여 동일인 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Q32 공탁소에서 검찰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팩스 전송을 하나요?

-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물론 검사도 형사공탁이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은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팩스로 전송합니다.

Q33 수 개의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이 다를 때 모든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나요?

-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탁자가 제출한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출력물”이나 “공판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통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하여 각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한편 위 공소제기 된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 하는 경우라면 병합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합니다.

Q34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문건으로 접수하나요?

-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별도의 문건코드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법원 문건접수의 방법에 의합니다. [MG101 문건 입력/수정] 화면에서 제출자구분 법원을 선택한 후 제출자 란에 공탁관을 기재하고 제출자명을 기재합니다(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홍길동' 또는 '공탁관 홍길동'). 문서명에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Q35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 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 합니다(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5항), [MG545 동일인 확인 증명서 출력/고지서출력]에서 고지서 양식을 출력하고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사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고지합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후단).

Q36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해야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후문의 '이 경우'는 '제1항, 제 2항의 형사공탁사실 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가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을 받았고 피해자가 고지를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고지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고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검찰에서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형사공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3항(대 검예규 제1329호)).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 고지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경우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하면 됩니다.

Q37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탁된 사실을 고지하나요?

○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참조).

Q38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그 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나요?

○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거나 재송부할 때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의 [별지 제4호 양식]을 사용하는데 그 양식에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됩니다.

Q39 개정 공탁규칙 부칙에 규정된 소급적용 대상 사건에 대하여 형사공판기록이 이미 검찰청에 인계된 경우 검찰에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면 되나요?

○ 개정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하게 되고,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 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대상 사건에 대한 해당 형사공판기록이 이미 검찰청에 인계된 경우 검찰에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Q40 위 질문의 경우 검찰에는 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면 되는지요?

○ 대검찰청·예규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 경우 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면 됩니다.

Q41 형사공탁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하게 됩니다.
- [WKT157 형사공탁공고등록]에서 공고할 사건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각각 체시(공고게시 버튼 활성화)하게 됩니다.
- 공고사항은 자동생성되고,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공고될 문서를 사전에 열람 및 확인 가능합니다.

Q42 형사공탁 공고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 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와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 (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 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 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 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3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내용 등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형사공탁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labl.kr>)

***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금 지급절차

Q44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에 따라 공탁금 출급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정 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 법원, 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피해자가 법원·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발급 신청 ⇒ 피공탁자(피해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

○ [개정 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법원·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법원,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로 송부 ⇒ 피공탁자(피해자) 공탁금 출급청구

○ 개정 전·후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비교

	현행	개선
발급 시기	피공탁자의 발급신청 시	형사공탁사실통지 접수 시
발급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수령	방문 신청 불요(증명기관이 발급·송부)
피해자 발급 요청 (발급지연)	×	○
인지대 납부	○	×

○ 공탁금 출급(또는 회수동의서 제출)을 위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하여 공탁소에 도달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5. 2024. 1. 26. 이후에는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등에 동일인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출급 및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공탁규칙이 개정되어 2024. 1. 26 시행되었습니다.

○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등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출급청구서와 나머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하였는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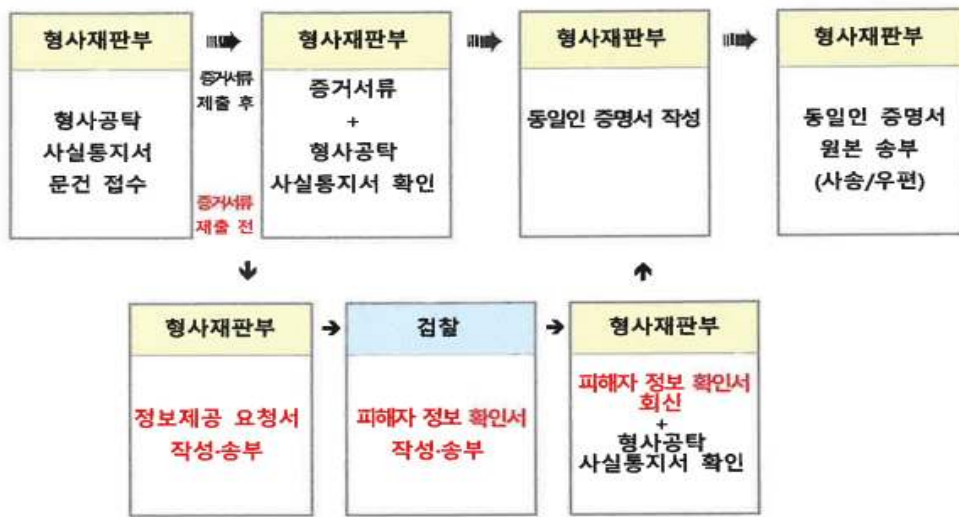
Q46 개정 공탁규칙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개관

○ 일반사건('일반사건'이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의미하며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은 법원이, 가명사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

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 함)과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인계된 사건은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해야 합니다(검찰의 경우 법원과 달리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피해자 동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반사건이지만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정보를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검찰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송부합니다.

○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는 발급기관(법원, 검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지고, 발급이 지연될 경우 피공탁자(피해자)는 각 발급기관에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법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기관(법원·검찰)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후 공탁소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습니다.

Q47 [검찰] 동일인 증명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되나요?

○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합니다 (대검예규 제2조 참조). 따라서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Q48 개정 공탁규칙의 시행[2024. 1. 26] 전에 발급받은 동일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나요?

○ 개정 전 규칙과 예규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적법하게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발급기관에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여 공탁관이 동일인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Q49 [시스템]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 WCR545 화면에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접수 현황을 확인한 뒤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피공탁자의 '연락처'와 형사 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추가로 직접 입력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 및 예규에 따르면 공탁소에서 송부한 형사공탁사실통지서가 접수되면 법원 또는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공탁소나 법원, 검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 송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0 동일인 증명서에 문서확인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탁소에서 피공탁자별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출력하면 문서확인번호가 자동 생성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 증명서에 형사공탁 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다시 기재하여 공탁소로 송부하 공탁관은 공탁서 등 공탁기록과 함께 동일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와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대조함으로써 피공탁 자(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1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는?

- 일반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정보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재판기록을 찾아 대조하고,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예시: 김본명, 김○○, 홍길동(가명)]으로 지칭되는 자가 맞는지 공소장 등이나 조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인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일반사건에서 검찰이 아직 법원에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피공탁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 명의로 검찰에 '피공탁자 정보제공 요구서'를 송부하고, 검찰로부터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명사건의 경우 또는 사건이 확정되어 재판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경우에는 재판기록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재판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사건의 경우 사건이 확정되기 전 형사공탁사실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검찰에 재판기록을 인계하기 전에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52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① 일반사건인지 가명사건인지 여부, ② 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 한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검찰에 기록이 인계되기 전 단계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형사공탁사실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재판기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법원 발급	검찰 발급
판결 확정 전 일반사건 (증거기록 제출 여부 불문)	가명사건
	일반사건 중 판결 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

Q53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심급이 달라도 상관 없나요?

-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하므로(개정 공탁규칙 제86 조 제1항),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심급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거나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예규 제11조제2항 참조) 증명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만약 하급심에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누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상급심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급심에서는 일반적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급심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의 분실 등으로 상급심에 증명서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5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
- 담당검사는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대검예규상 피해자에게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업무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는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Q55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는?

-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형사재판부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와 당해

형사사건의 피해자 동일성 여부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습니다.

○ 통상 형사공탁사실접수통지가 있으면 법원 또는 검찰이 지체 없이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송부할 것이나, 어떠한 이유에서 발급·송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피공탁자(피해자)가 서면(재판양식 B4971)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면 됩니다.

○ 서면(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이 아닌 전화로 재판부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한 후 결과 보고서(재판양식 B4974)를 작성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면 됩니다.

Q56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했는데, 동일인 증명서가 법원·검찰로부터 아직 송부 전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발급기관인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6조제5항 등 참조). 이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은 피해자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검찰이 증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이 검찰에 피해자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 정보 제공이 지연될 경우에도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전화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6조 제5항 및 예규 제13조제1항 참조).

Q57 법원에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 하였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

○ 검찰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검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이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참조).

Q58 피공탁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받은 형사재판부나 검찰은 증거 서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피공탁자에게 증명서 발급·송부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피공탁자는 관할공탁소 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나 검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송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확인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형사사건이 가명사건에 해당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형사공탁사실을 통지를 받은 검찰이나 1심 판결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되기 전이라면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Q59 개정된 공탁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개선된 증명서 발급절차가 소급적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법원행정처에서는 형사공탁 시행일인 2022. 12. 9.부터 개정 공탁규칙 제86조의 시행일 전일인 2024. 1. 25.까지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 중 공탁금이 출급되지 않은 공탁사건의 목록을 해당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해당 공탁소에서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 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합니다. 이를 재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각 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위하여 공탁소에 방문하는 등 출급을 요청한 경우 공탁관은 즉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출력하셔서 발급기관에 재송부하시기 바랍니다.

Q60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재송부 사실이 그 통지서에 표시되나요?

○ 개정 공탁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정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 규)'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탁소에서 공탁사실통지서를 법원 또는 검찰에 재송부할 때 그 공탁사실통지서의 여백에 아래와 같이 재송부 취지(예규별표 4)를 기재하여 송부합니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재송부	
대법원 행정예규 0000호 부칙에 의함	
○○지방법원(○○지원) 공탁관 ○ ○ ○	인

Q61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로 피공탁자임을 확인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요구됩니다(예규 제20조 참조).

○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이 이뤄지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피공탁자가 제출할 수 있는 서면이기 때문에 회수동의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여 피공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기관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13조 참조).

Q62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명의 그대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 하고, 그 후 공탁소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 동일인증명서의 발급은 법원 또는 검찰이 발급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또는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명의를 그대로 기재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하고,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관계 서류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

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공탁관은 출급 청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보청권고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2307-2호).

Q63 강도살인사건 등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또는 상해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탁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명서의 피공탁자는 사망한 피해자가 기재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이 인정된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는 점과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상속관계는 공탁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Q64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 “삼단바코 드(위변조방지바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의 진위확인 코너를 이용하여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위변조 방지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구글플레이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하단 우측)전체 메뉴 음성변환/진위확인 코너 선택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 스캔 원본 문서 확인